CDSA에 따른 자금세탁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범죄 유형

부패·마약거래 및 기타 중대범죄(이익몰수)법(Corruption, Drug Trafficking and Other Serious Crimes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1992, CDSA) Part 6은 자금세탁 범죄를 규정합니다. Section 51은 다른 사람이 범죄행위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거나 그렇게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이 범죄행위의 이익을 보유하도록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Section 54는 자신의 것을 포함하여 범죄행위의 이익을 취득, 소지, 사용, 은닉 또는 이전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Section 55는 범죄행위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면서 그에 관하여 만족스럽게 해명하지 못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2019년에 추가된 Section 55A는 인식은 없지만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자금세탁을 돕는 사람을 처벌합니다. 주된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개인의 경우 5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또는 10년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100만 싱가포르달러 또는 관련 재산 가액의 2배 중 높은 금액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이 구조가 디지털 자산 사업에 중요한 이유는 주관적 요건에 있습니다. Section 51과 54는 자금이 사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면서 출금을 처리하는 거래소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최대 25만 싱가포르달러 또는 5년으로 처벌되는 ss 51(1A) 및 54(3A)의 과실 단계는, 믿거나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55는 실질적 증명책임을 전환합니다. 검찰이 재산이 범죄수익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증명하면, 피고인이 이를 만족스럽게 해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거래소 계좌로 USDT를 받아 전달한 자금 운반책(money mule)은 그 출처를 묻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제범죄와 외국적 요소

'범죄행위'란 제2부칙(Second Schedule)에 열거된 중대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싱가포르에서 저질러졌다면 중대범죄가 되었을 외국의 중대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부칙은 길며 사기(cheating), 형사적 신탁위반, 컴퓨터 오용,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PSA)상 라이선스 범죄 및 조세포탈을 포함합니다. 2019년부터 이 법은 일응의 증명(prima facie case)이 있으면 싱가포르에서 중대범죄가 되었을 해외 행위가 그 행위지에서도 범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 덕분에 검찰은 자금 운반책 사건마다 외국법을 증명할 부담을 덜게 됩니다.[2]

스위스 실무가에게는 스위스 형법(Swiss Criminal Code) 제305조의2(Art. 305bis)와의 비교가 시사적입니다. 스위스는 전제범죄로서 중죄(felony) 또는 가중 조세범죄를 요구하며, 몰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싱가포르는 합리적 의심하의 단순 소지를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취급 행위를 처벌하며, 과실에 의한 조력에도 미칩니다. 싱가포르의 직원은, 취리히에서라면 기껏해야 자율규제기구(SRO)가 제재하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상 의무 위반에 그쳤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F편 제V장 및 제H편 제I장 참조).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신고 의무와 정보누설(tipping-off)

거래, 직업, 사업 또는 고용 과정에서 재산이 범죄행위의 수익임을 알거나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사람은 의심거래보고를 할 의무를 집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은 s 45에 따른 범죄입니다. 정보 누설, 즉 보고가 이루어지거나 수사가 개시된 후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s 57에 따라 최대 25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 또는 3년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하여 처벌됩니다.[3] 변호사법(Legal Profession Act)에 따른 변호사의 지위와 디지털 지급 토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고 제도의 세부 사항은 제L편 제IV장에서 다룹니다.

특징	싱가포르(CDSA Part 6)	스위스(Art. 305bis SCC)
전제범죄	제2부칙상 중대범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범죄	중죄 또는 가중 조세범죄
자기 범죄 수익	포함(s 54)	포함(자기세탁 처벌)
과실 유형	있음, ss 51(1A), 54(3A), 55A	없음(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고의 필요)
의심하의 소지	증명책임이 전환된 범죄(s 55)	상응 규정 없음
법인 벌금	최대 100만 싱가포르달러 또는 재산 가액의 2배	Art. 102 SCC에 따라 최대 500만 스위스프랑
정보 누설	s 57, 최대 3년	Art. 10a AMLA 금지, AMLA에 따른 제재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CDSA 1992, ss 51(1), 54(1)–(3), 55, 55A 및 57, Singapore Statutes Online(2026년 6월 열람): 규정된 처벌, 과실 기반 유형에 대한 ss 51(1A) 및 54(3A)의 낮은 단계 포함. ↩
2. CDSA 1992, s 2(1)의 "criminal conduct", "serious offence" 및 "foreign serious offence" 정의 및 Second Schedule, Singapore Statutes Online. ↩
3. CDSA 1992, s 57(정보 누설), Singapore Statutes Online(2026년 6월 열람); s 45(신고 의무)는 현행 처벌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법에서 인용.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